

審 查 報 告 書

1997. 10. 7

1. 審 查 經 過

- 가. 提出口字 : 1997. 9.12
- 나. 提出者 : 瑞山市長
- 다. 回附日字 : 1997. 9.19
- 라. 上程口字 : 1997. 9.27

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 : 建築課長 金昌憲)

가. 提案理由

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중 금융기관에 대여한 융자금에 대한 이율·상환방법 및 납기일이 제정경제원장관이 정한 금리와 맞지 않아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主要骨子

- 이율은 제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로 하고,
-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토록 규정함.
(안 제9조제3항제1호가목)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본 조례 개정안은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중 금융기관에 대여한 융자금에 대한 이율·상환방법 및 납기일이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금리와 맞지 않아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, 관련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고 문제점도 없다고 판단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 : 없음

5. 討 論 : 없음

6. 少數意見 : 없음

7. 審査結果 : 원안 가결

제안번호	제 155 호
의결년월일	1997. . . (제 회)

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7. 9.12.

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: 1997. 9. 12

제 출 자: 서 산 시 장

의안 번호	155
----------	-----

1. 제안이유

농촌주택개량 융자금중 금융기관에 대여한 융자금에 대한 이율·상환방법 및 납기일이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금리와 맞지 않아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이율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로 하고,
- 나. 상환방법은 5년 거치, 15년 체증상환토록 규정함.
(안 제9조제3항제1호가목).

3. 참고사항

- 주택건설촉진법제11조제3항
 -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제7조(융자금의 금리와 기간)
 - 이 회계의 융자금·예탁금 및 예수금의 금리와 융자·예탁 또는 예수의 기간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자금운용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원 장관이 이를 정한다.
- 예산관련 사항
 - 주택개량사업은 동당 16백만원을 융자지원하는 것으로
 - 우리시 '97년도 사업물량은 170동으로, 총사업비 2,720백만원중 시비(10%)부담분인 272백만원을 농협과의 협약체결로 융자지원

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제1호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한다.

가.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

· 이 율 :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

· 상 환 방 법 :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.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음자 및 보조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음자금의 이율과 음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1. 주택개량사업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가.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· 이 율 : 5.5%(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· 상환방법: 5년 거치 15년 원금 불균등 할부 상환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· 이자납기: 매월 말일</p> <p>나. ~ 마. (생략)</p> <p>2. ~ 3. (생략)</p>	<p>제9조(음자 및 보조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주택개량사업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가.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농어촌 주택개량 음자금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· 이 율: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· 상환방법: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</p> <p>나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
농어촌주택개량대여자금 년차별 상환기준

(기준:백만원당, 단위 :원)

구 분	대 여 원 금	상 환 비 율 (%)	비 고
1. 차 년 도			
2. 차 년 도			
3. 차 년 도			
4. 차 년 도			
5. 차 년 도			
소 계			
6. 차 년 도	16,000	1.60	
7. 차 년 도	17,760	1.77	
8. 차 년 도	19,714	1.97	
9. 차 년 도	21,882	2.19	
10. 차 년 도	24,289	2.43	
소 계	99,645	9.96	
11. 차 년 도	44,961	4.50	
12. 차 년 도	49,961	4.50	
13. 차 년 도	55,397	5.54	
14. 차 년 도	61,491	6.15	
15. 차 년 도	68,254	6.83	
소 계	280,010	28.01	
16. 차 년 도	99,763	9.98	
17. 차 년 도	110,737	11.07	
18. 차 년 도	122,918	12.29	
19. 차 년 도	136,439	13.64	
20. 차 년 도	150,488	15.05	
소 계	620,345	62.03	
합 계	1,000,000	100	